

정의당 이정미의원의 [식용견농장의 단계적 폐쇄 및 보상·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동물
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입장문

2017년 12월 29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문

현재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대표 발의 예정인 [식용견농장의 단계적 폐쇄 및 보상·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의원과 정의당은 동물복지 증진에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개식용종식을 위한 고민의 결과로 이번 특별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현 개식용산업과 파생되는 갈등, 동물복지의 훼손은 다름 아닌 '정부'의 무위와 무능이 자초한 어처구니없는 결과이기에 그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이 귀속되는 정부 차원의 해결을 제안하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 동안 불법 탈법의 영역에서 장기간 영위되어 온 우리나라 '개식용산업의 특수성과 본질' 그리고 현재 개식용산업계 내·외부의 상황과 국제·국내적 동물복지 추진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의시기와 내용을 포함 한 전면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제안 이유에 언급한 개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식용견 농장을 폐쇄한다는 목적이 수행되려면 ① 식용개농장 종식년도 최장 2030년 이내로 설정 ② 개식용금지 입법 및 캠페인 활동과 병행 ③ 마릿수 보상이 아닌 시설·장비·설비 지원으로 한정 ④ 전업 및 폐업 보상기 가족분뇨처리시설 신고 농가에 한정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개식용산업 종사자들은 법 테두리 밖에서 상대적으로 허술한 관리체계를 심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많은 이득을 취해 온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개고기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더욱 빠르게 변화하여 개식용 산업은 위축될 것입니다. 보상과 전업지원은 그냥 두어도 고사될 산업 종사자들에게 빠른 탈출을 위한 출구 전략으로서 개식용 종식 플랜의 일부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 법안 내용에 큰 틀에서 위에 제시한 4가지 조건이 우선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요 감소와 불법행위 노출로 사그라들고 있는 불법적 개식용산업에 국가가 면죄부와 합법적 연명의 길을 열어주고 개식용종식을 위한 시민캠페인에 족쇄를 채우는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에게는 수행 불가능한 수준의 소위 '잉여 식용개'들의 보호책임을 떠안기는 등 여러 면으로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카라는 어떤 경우이든 이 법안이 합리성과 유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정미의원실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다른 한편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해 합리적인 시민들과 함께 더 가열차게 개식용 종식을 위한 캠페인 입법 조사 활동을 다방면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경북 김천에 건립중인 막대한 규모의 개농장 신축 현장 - 닭과 돼지 감금틀이 철폐되는 마당에 개들의 베테리 케이지 사육이 용인되고 신규 건립되는 유일한 OECD 경제 대국 한국의 민낯이다.

---아래---

1. 국제·국내적 동물복지 흐름에 따른 한국 동물복지 개선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며 사육하는 생산 방식이 철폐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농장동물의 공장식축산은 물론 식용을 위해 개들까지 잔인한 철장 사육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식용문제는 이미 국제적 동물복지 이슈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동물학대 행위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큰 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법과 문화 그리고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공존을 확보하는 장기적 국가 동물복지 추진 플랜입니다. 개식용 업자와 동물단체가 정부를 중재자로 두고 대면하여 서로의 이해를 다투는 방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동물복지 이슈로서의 개식용 종식 추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식용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을 도출하고 여기에 개식용종식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이 함께 수립 제시되어야 합니다.

2. 우리나라 개식용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978년 정부는 개고기가 정육 축산물에서 제외되고 이후 동물보호법으로 잔인한 개도살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정부는 개식용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행정적 무위속에서 개식용 업자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무한히 개식용산업을 산발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한편 개는 허가 없이 누구나 키울 수 있고, 단시간에 많은 새끼를 낳아 사육 마릿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데다 사람을 따르는 특성에 특별한 사육 시설이나 기술 없이도 아무나 손쉽게 사육하고 대규모 농장으로 수를 늘릴 수 있어 대 여섯 마리부터 수천 마리 이상까지 개를 키워 팔거나 도살까지 겸업하는 기회 사업자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무엇을 '식용개농장'으로 보고 보상할 것인지부터 해결 불가능한 난제인 것입니다. 불법적 음식쓰레기 공급만 당장 차단해도 개농장의 대다수는 이익은 커녕 존립할 수조차 없습니다. 보상과 전업 이전 불법행위 적발과 시정 그리고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정부의 책임만큼 개사육업자들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법안이 되어야 합니다.

개사육업자들은 사육부터 도살까지 허가나 관리 등 거의 아무런 제재 없이 그동안 마음대로 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까지 막을 만큼 개식용 업자들의 행위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국 의회에서 한국 개식용문제가 논의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식용문제 때문에 보이콧 하자는 서명운동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측정 불가능한 국가 이미지 손실을 댕가로 얻은 이익은 개식용업자들이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국가가 정책적 방향성 제시 없이 방치하는 동안 개사육업자들은 공짜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형성된 것이 한국의 기형적인 대규모 개농장들입니다. 많은 사업과 업종이 시대에 따라 명운을 달리하며 그 판단의 일차적이며 최종적 책임은 각자의 것입니다. 개식용문제에 관한 한 정부가 방치하며 여지를 보인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그동안 스스로 이익을 추구해 온 개농장들도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결과를 외부에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동물보호법에 식용 목적 개도살 및 개식용 금지 명문화와 병행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학생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죽은 개를 토막낸 70대가 학생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키우던 개를 망치로 도살하거나 목을 매달아 살해하는 행위도 여전히 빈발합니다. 특별법에 의한 전업 보상의 기간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시되는 것이기에 단순히 개농장만 없애는 것이 아닌 '개식용종식'을 위한 총체적 활동 중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개식용 도살행위는 학대로 고발되는데 업자들이 상업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개도살은 법이 보호해 준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업 보상과 함께 국가가 개식용을 일정 유효기간을 두고 종식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지 않는다면 개식용 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시간을 주고 최종적으로 보상 잔치를 벌이도록 지원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농장 사라지는 종식년과 일치되는 시기에 반드시 동물보호법 또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개식용을 금지함으로써만 '식용개농장 전업보상 특별법'은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법안 발의 전 개식용산업에 대한 정밀한 필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식용산업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개농장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며 몸집을 불리는 한편 영세 개농장들은 더욱 열악한 사육 형태를 취하거나 망하는 등 업계 내 사업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후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산업계 내부 재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영세 개농장의 폐업은 기정사실입니다. 폐업한 개농장의 영업 이익은 대형 개농장이 흡수할 것이며 이익을 흡수한 개농장은 실컷 영업을 영위하다 최종적으로는 최대한 개들의 마릿수를 늘려 국가의 보상을 받으면 되니 개사육자에게 마릿수 보상을 명시한 현재의 전업지원 특별법은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는 고마운 법안입니다.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인 만큼, 보상 기준의 정밀한 수립을 위한 동물단체가 포함된 전문 연구 기관의 사전 필드조사가 전제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신고된 농장에 한 해 기 신고된 사육 마릿수에 대해서만 보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6.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민 캠페인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용개농장 전업보상 특별법은 개식용종식을 위한 출구 전략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민 캠페인에 어떠한 제재나 한계가 부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폐업 혹은 전업 지원을 먼저 신청한 농가일수록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며, 빠른 폐업과 전업을 위해 개식용종식을 위한 시민 의식 전환과 이를 위한 시민 캠페인이 지원되고 지지되어야 합니다. 전업보상이 진행되는 기간은 개사육과 개도살이 합법적인 기간인 것이 아니라, 종식을 지향하며 다가가는 과도기적 진행 과정으로서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사육업자나 그 외 업계 종사자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기간 동안 아직 전업 혹은 폐업하지 않은 농장 혹은 기타 업계 관계자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과 계도 그리고 처벌이 더욱 강력하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7.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정확한 법안이 되어야 합니다.

소비 위축과 여론 악화로 개사육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그릇된 보신의식과 중장년층 이상의 습관적인 개고기 취식 그리고 이민 노동자들의 개고기 취식을 제외하며 새로운 소비 창출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개 값이 폭락하면 사육자들은 개 사육을 포기하거나 사육 마릿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도 없이 모든 개사육자에게 '마릿수 보상' 카드를 제시하는 순간 전국의 개사육 마릿수는 몇 배로 뛰게 될 것입니다. 유기견이나 주인이 포기한 개들을 데려다 번식시키며 '식용개농장'으로 둔갑하거나 식용과 애견 사육을 병행하는 농장들도 '식용개농장'으로서 모든 개들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없는 보상 전업지원은 음식쓰레기 자원을 인공호흡기로 달고 연명하던 개식용 산업에 새로운 막대한 자원을 제공하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8. 개식용업계 내 또한 타 합법 축종 사육자 여타 업종 및 업계와의 형평성 고려되어야 합니

다.

개농장은 축사도 필요 없이 케이지 사육이 허용되며 일정 면적 이하이지만 하면, 임야에서도 사육이 가능합니다. 쓰레기를 먹여 키웁니다. 마음 내키는대로 도살합니다. 유일하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 뿐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허술한데도 이 조건마저도 위반하는 개농장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예 지키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런 나태한 의식을 가진 사육자들에게 개들의 최소한의 복지와 인도적인 취급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개식용산업 전반에 만연된 법적 태만은 불가능한 게 없을 만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 왔습니다. 타 허가 축종들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공장식축산 정책으로 현재 파국에 이르러 있긴 하지만, 업계 내부의 자성과 동물복지농장 확대 여론이 비등하며 자성과 함께 해결의 단서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애견 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이제 법이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업계 내 자성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이런 때, 똑같은 동물을 사육하면서 식용개업자들에게만 보상과 차별적인 지원이 주어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